

사회 경제 스포츠 라이프 연예 문화 여행 사설/칼럼 영문기사 라디오서울  
경제 생활경제 타운비즈니스 생활법률 자동차 증권 상담코너 부동산

전자신문 | 안내광고 | 한인업소록 | 열린마당

더보기 ▾

[hankook.com](#)

한국일보

RADIO SEOUL



뉴스홈 > 경제

Tweet 0

Like 0

크게

작게

프린트

이메일

입력일자: 2014-10-09 (목)



가정폭력을 당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VAWA) 조항의 혜택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도움 없이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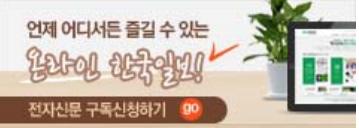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이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고 결혼이 종결된 후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加害자가 가정폭력으로 영주권자 신분을 박탈당했더라도 피해자는 관계없이 VAWA 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加害자가 영주권자 신분을 상실한 후 2년 내에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민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VAWA 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진실 된 결혼이라는 것,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것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진실 된 결혼이었다는 것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집, 보험증권, 아파트 임대계약서, 자동차 보험,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명세서, 세금보고서, 클럽회원증, 고지서 등과 자녀 출생증명서, 결혼식 사진, 결혼식과 관련 자료와 영수증, 휴가여행사진, 같은 주소의 운전면허증, 제3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이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생활에 필요한 입금과 인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좋다. 혹시 이전에 제출했던 가족초청서류와 영주권 신청서가 있다면 그것 또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加害자와 함께 거주했던 기록이 없는 경우 VAWA 이민청원서는 거절될 수도 있다. 함께 거주한 기록이 없다면 진실 된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극심한 가정폭력 또는 학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정신과 의사에게 받은 진단서, 사회복지사에게 받은 케이스 보고서, 경찰에게 받은 범죄기록과 경찰보고서, 친구와 가족에게 받은 진술서 등이 될 수 있다.



전자신문 구독신청하기 go

- 많이 본 기사 1/5
- '김정은 다리 부상 100일 정도 치...
  - '밸릿파킹 불안해서 어디 맡기겠나...
  -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 "이착륙 때 스마트폰 금지하라" 항공기 ...
  - 유병언 미국 내 재산 밝혀지나...
  - 한인마켓 재철 해산물 싱싱 ...
  - 하루 한 알로 3개월 내 C형 간염 ...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법원에 이송조정...
  - 미 신규이민 아시안이 주도...
  - 한인학부모 '카톡 뒷담화' 포트리 학...



Homes from the  
\$700s to over  
\$1.5 million

Great Park  
NEIGHBORHOODS

Bankruptcy Law  
gsklaw 법호사  
323-795-5895



그리고 정신적인 폭력은 언어학대, 사회적 고립, 강한 소유욕, 삶의 질의 하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민국에서 가족관계, 가정폭력 전 피해자의 정신상태, 가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삶의 질과 가정폭력 후의 정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VAWA 이민청원서를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친구, 가족, 고용주 등에게 좋은 성품을 증명하는 진술서,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봉사를 했던 기록, 범죄 사항이 없다는 기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신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것 또한 증명해야 한다. 그 것은 시민권 증서, 미국여권, 영주권, 출생증명서 등으로 가능하다.

VAWA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에서 승인된 후 가정폭력 피해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민국 심사관은 가정 폭력과 관련된 사실은 질문하지 못하고 이미 승인된 VAWA 이민청원서 또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심사관은 승인된 청원서를 취소해야 한다고 상사에게 의견을 표시할 수는 있다. 보통 이민국 인터뷰를 통과하면 VAWA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VAWA 법안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거나 이혼을 했더라도 영주권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VAWA 이민 청원서는 요구사항이 까다롭고 복잡하기에 많은 준비와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과 관련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진술서로 만들어야 하고 충분한 증빙 자료를 VAWA 이민청원서와 제출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많이 도와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

AD 웹사이트 제작 전문업체

AD Law Firm Web Design

AD 과거 신문보기도 가능해요 E-Newspaper

AD 더욱 똑똑해진 한국일보 전자신문으로 뉴스를 한눈에...

AD 읽을거리가 풍부한 WeeklyH를 온라인으로

AD E-paper 푸드 매거진으로 저녁 식단 결정하는 주부들이 늘어...

회사안내 | 구독신청 | 독자 의견 | 배달사고 접수

4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el.(323)692-2000, Fax.(323)692-2020

Copyright ©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